

fax: 723-5055
간제?5 일장

대 법 원
제 3 부
판 결

사 건 2000두708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원고, 피상고인 음영천
서울 강북구 미아8동 324-73

피고, 상고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
소송수행자 남삼식, 안왕선, 여철기, 강성호,
최세훈, 박세진, 한경희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0. 7. 12. 선고 2000누1562 판결

판 결 선 고 2003. 4. 25.

주 문

원심판결 중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, 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,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.

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

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1. 원심은, 피고가 이 사건 공안사범사후관리지침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이후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 지침을 폐기하여 현재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지침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,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 뒤 위 지침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그러나,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대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을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었다든가 하여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·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위 지침에 관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 이후 위 지침이 폐기되어 피고가 위 지침을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위 지침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, 거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.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.

2. 한편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지침에 기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와 동향파악대상자의 각 등급별 숫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이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적용대상제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(원고에 대한 동향파악관리카드는 같

정본입니다.

200

대 법 원

법원사무관

안필화

인